

제61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

차수	32차 정기
일시	19. 10. 28. 18 : 30
장소	총학생회실

참석확인 (11/13)

간호	경경	공대	사범	사과	약학	예술	인문	의학	자연	동연	부총	총
X	o	O	O	O	O	O	O	X	O	O	O	O

'의학부(18학번) 백창엽 학우의 중앙운영위원회 32차 정기회의 참관'에 대한 의결 -> 총 9단위 중 찬성 9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
□ 보고 안건

1. 단위별 특이사항 및 일정보고

- 경경 : 10/29(화) 단학대회 진행. 선거일정 공고
- 공대 : 10/29(화) 선거일정 공고.
- 사범 : 10/31(목) 단학대회 진행.
- 사과 : 10/28(월) 선거일정 공고 완료, 10/29(화) 에어팟 케이스 만들기 사업 진행.
- 약학 : 11/2(토) 13시~16시 체육대회 진행.
- 예대 : 11/15(금) 학교 체육관에서 동문회 행사 진행.
- 인문 : 10/28(월) 선거일정 공고 완료, 11/19, 20일 양일간 투표 진행 예정.

2. 김장콘서트(11월 09일 노들나루공원)

- 동작구청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. 홍보 게시글 공유 바람.

3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일 개설

- vote.cau62nd@gmail.com

□ 의결 안건

1. 학생회비 배분

- 총 입금액 1,748,000원 중 1,710,000원 = 180명 본인 확인 완료.
- 4명분 38,000원은 본인 확인 불가.
- '4차, 5차 학생회비를 기존 학생회비 배분 방식대로 배분하며, 확인 불가능한 38,000원에 대해서는 총학생회로 배정한다'에 대한 의결 -> 총 9단위 중 찬성 9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
2. 예산자치제 규정 개정

- '예산자치제 규정(10.28) 개정본으로 개정한다'에 대한 의결 -> 총 9단위 중 찬성 9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- 이번주에 예산자치제 공고 예정.
- 예산자치제 규정 공유(sns 및 중대중심)

3.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

- '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장 8조 가항에 의거하여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장, 집행차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한다'에 대한 의결 -> 총 9단위 중 찬성 9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
□ 논의 안건

1. 62대 총학생회 선거

- 일정, 경품, 투표방법, 공간 및 기자재 요청, 중앙선거관리위원 시간표, 유권자 등
- 선거일정 : 공청회(11/21(목)으로 변경), 후보자 추천서 배포(첫날만 08:30 시작), 개표장소(102관 3층 대강당)
- '62대 총학생회 선거일정'에 대한 의결 -> 총 10단위 중 찬성 10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- '모바일 전자투표와 오프라인 전자투표 투표방법을 통해 선거를 진행한다'에 대한 의결. 총 10단위 중 찬성 10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- 경품 : 경품을 미리 공개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함. 에어팟 2세대.
- '선거독려 물품(에어팟2세대)을 총학생회 선거에 투표한 학생 중에서 추첨하여 준다'에 대한 의결 -> 총 10단위 중 찬성 10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- '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장 18조 나항에 의거하여 선본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학교 부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요청을 한다'에 대한 의결 -> 총 11단위 중 찬성 11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- 후보자 추천서 배포(11/4 ~ 11/11)를 위해 중선관위 시간표 취합(각자 일정 포함).
- 간호대, 약대, 의대, 유아교육과 실습생에 대해 기본 유권자로 포함.
- '교환학생을 선거시행세칙 30조의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'에 대한 의결 -> 총 11단위 중 찬성 11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- '산하협력인턴자를 선거시행세칙 30조의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'에 대한 의결 -> 총 11단위 중 찬성 11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-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, 영어, 중국어로 선거 현수막 제작 고려 중.
- 유학생 관련하여 각 단운위 논의 후 다음 중운위에서 의결.
-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논의 :
 - 선거시행세칙 제3장 21조 '참관인, 선본원 증명서 제출관련' -> 참관인은 선본원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참관인에 대한 증명서는 재제출 할 필요 없으며 명단만 제출하면 된다.
 - 제4장 28조 '대표자'의 의미 -> 동아리 및 소모임 대표자의 경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동아리의 해석여지가 있기에 소속이 명확한 단과대 소속 동아리(소모임) 및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의 대표자(직책을 맡은자)까지 선거운동 불가함으로 적용.
- '선거시행세칙 제4장 28조 가항 '대표자'의 의미 해석을 단과대/동아리연합회 소속의 동아리와 소모임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포함한다'에 대한 의결 -> 총 11단위 중 찬성 11단위, 반대 0단위,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- '선본원과 중선관위(중선관위로 임명된 총학생회 2인 포함)의 사적인 만남을 제한한다. 단,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해야 하며 이에 대해 중선관위에서 의결한다'에 대한 의결 -> 총 11단위 중 찬성 11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로 **가결**

□ 기타 안건

1. 단과대 학생회실 위치

- 성평등위원회 자료집 배포를 위해 조사.